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6. 3.29(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과	담 당 자	·과장 조무영, 사무관 양정선, 주무관 이승철 ·☎ (044)201-3840, 3841
보 도 일 시		2016년 3월 3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29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수입차 정비 일반 정비업체에서도 가능해진다

-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정비 장비·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 시행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「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·교육 및 정비 장비·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」을 제정하여 **3월 30일(수) 공포·시행**한다고 밝혔다.

○ 그 동안 특히 **수입차의 경우** 기술지도·교육과 정비장비·자료 등을 **직영정비업체(서비스센터)에만 독점적으로 공급**함에 따라 직영정비업체 외에는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.

○ 이에 따라 수입차 소유자는 국산차에 비해 **정비에 장기간이 소요**되고 **비싼 정비요금을 지불**하는 불편을 겪으면서도 직영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할 수 밖에 없었다. 또한 직영정비업체로 가입하지 못한 **일반 정비업자**는 수입차에 대한 정비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돌려보낼 수 밖에 없어 **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**해왔다.

□ 이번 규정 마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.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자동차제작자등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판매되는 신차에 대하여 **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**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**온라인 교육**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작하여야 한다.

○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는 제작자가 **직영정비업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**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을 시작하여야 한다. 고장진단기는 **제작자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**할 수 있도록 하고, 제작자는 **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**를 고장진단기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에 제공하여 **범용고장진단기 개발이 가능**하도록 했다.

○ 제작자는 도난방지장치의 초기화 등 **보안관련 정비작업**에 대하여는 **소유자의 동의 확인을 거쳐 지원**하여야 한다. 다만 정비 이후 차량 도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**보안관련 작업자 이력을 관리**하고, 제작자·정비업자·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**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**할 수 있도록 했다.

○ 한편, 제작자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**즉시 시행이 곤란한 경우는 유예신청**을 통해 **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**할 수 있도록 했다. 또한 **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소규모 제작자**의 경우에는 **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**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정이 **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정비 서비스를 제공**하기 위해 **국내외 자동차제작자, 자동차 정비업계, 고장진단기 업체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마련**된 것인 만큼,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업계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,

○ **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**을 통해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양정선 사무관(☎ 044-201-384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